

부산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45045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김태형

피 고 1.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최진혁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5. 2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들과 F 사이의 별지1, 2, 3 목록 기재 각 금전지급행위를 모두 취소한다. 2. 가. 원고 A에게, 피고 D은 77,950,560원, 피고 E는 8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피고 D은 51,000,000원, 피고 E는 1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원고 C에게, 피고 D은 15,140,000원, 피고 E는 10,309,3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F는 2006.경부터 ‘G’이라는 상호로 문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D은 F의 부이고, 피고 E는 F의 모이다.

나. 원고 A의 F에 대한 채권

원고 A는 2014. 11. 1. F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후 2015. 7. 13. 6,000만 원, 2018. 5. 28. 1,8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다. 원고 B의 F에 대한 채권

1) 원고 B은 대여금 명목으로 F의 계좌로 2017. 5. 12. 1,750만 원, 2018. 4. 3. 4,000만 원, 2018. 7. 20. 1,000만 원, 2018. 7. 23. 950만 원, 2018. 8. 1. 900만 원 합계 8,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F로부터 2019. 2. 16. 2,200만 원을 변제받았다.

2) 이후 원고 B은 F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20차전5059호로 위 대여금 6,400만 원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0. 11. 2. 위 신청취지대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20. 11. 21. 확정되었다.

라. 원고 C의 F에 대한 채권

1) 원고 C는 2017. 7. 14.부터 2017. 9. 7.까지 20,449,320원을, 2017. 11. 8. 1,000만 원을 각 F에게 대여하였고, 이후 2017. 11. 30. F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받았다.

2) 이후 원고 C는 F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20차전5008호로 위 대여금 25,449,320원²⁾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0. 10. 29. 위 신청취지대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20. 11. 17. 확정되었다.

마. F에 대한 형사 판결

F는 원고 B, C를 기망하여 위 각 대여금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2020. 1. 8.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2020. 9. 16.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20고단61호),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0. 12. 10.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이 법원 2020노3073호), 이후 2021. 2. 19.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대법원 2020도18139호)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F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지급행위

F는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별지1, 2, 3 목록 기재와 같이 2016. 1. 13.부터 2018. 4. 4.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251,399,880원³⁾을 송금(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F가 부모인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별지1, 2, 3 목록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각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액배상으로서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F는 G을 운영하면서 피고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피고들의 계좌로 카드결제대금을 송금하거나, 피고들로부터 차용하고 위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변제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피고들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F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고 변제받은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관한 판단

1) 원고 A

원고 A가 F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8. 5. 28.까지 합계 1억 7,8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가 그 취소를 구하는 별지1 목록 기재 금전지급행위는 2016. 1. 13.부터 2016. 12. 27.까지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 A의 대여금 채권 중 별지1 목록 기재 금전지급행위 전에 성립한 2014. 11. 1.자 대여금 1억 원, 2015. 7. 13.자 대여금 6,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의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원고 B

원고 B이 F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2018. 8. 1.까지 합계 8,6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B이 그 취소를 구하는 별지2 목록 기재 금전지급행위는 2017. 5. 22.부터 2017. 7. 21.까지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 B의 대여금 채권 중 별지2 목록 기재 금전지급행위 전에 성립한 2017. 5. 12.자 대여금 1,750만 원의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원고 C

원고 C가 F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17. 11. 30.까지 합계 25,449,32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C가 그 취소를 구하는 별지3 목록 기재 금전지급행위는 2017. 11. 10.부터 2018. 4. 4.까지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 C의 대여금 채권 중 별지3 목록 기재 금전지급행위 전에 성립한 2017. 7. 14.부터 2017. 9. 7.까지의 대여금 20,449,320원 및 2017. 11. 8.자 대여금 1,000만 원 합계 30,449,320원의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 변제가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가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들과 F는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해 온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의 계좌에서 피고 D의 계좌로 2016. 1. 13.부터 2018. 4. 4.까지 송금된 돈은 총 277,490,560원이고, F의 계좌에서 피고 E의 계좌로 2016. 2. 3.부터 2017. 12. 22.까지 송금된 돈은 총 124,320,000원이다.

순번	송금일	송금액(원)	비고
1	2016. 1. 13.	12,800,000	
2	2016. 3. 14.	7,250,000	원고들이 사해행위로 주장하지 않음
3	2016. 4. 22.	16,500,000	
4	2016. 6. 23.	16,000,000	
5	2016. 8. 16.	7,000,000	원고들이 사해행위로 주장하지 않음
6	2016. 8. 24.	2,000,000	원고들이 사해행위로 주장하지 않음
7	2016. 9. 19.	16,000,000	
8	2016. 10. 14.	1,200,000	원고들이 사해행위로 주장하지 않음
9	2016. 11. 21.	8,000,000	원고들이 사해행위로 주장하지 않음
10	2016. 12. 22.	1,500,000	원고들이 사해행위로 주장하지 않음
11	2016. 12. 27.	16,650,560	
12	2017. 2. 20.	7,880,000	원고들이 사해행위로 주장하지 않음
13	2017. 2. 27.	12,000,000	원고들이 사해행위로 주장하지 않음
14	2017. 3. 8.	10,000,000	원고들이 사해행위로 주장하지 않음
15	2017. 3. 8.	6,000,000	원고들이 사해행위로 주장하지 않음
16	2017. 3. 13.	10,000,000	원고들이 사해행위로 주장하지 않음
17	2017. 3. 13.	10,000,000	원고들이 사해행위로 주장하지 않음
18	2017. 3. 13.	10,000,000	원고들이 사해행위로 주장하지 않음
19	2017. 3. 14.	13,500,000	원고들이 사해행위로 주장하지 않음
20	2017. 4. 19.	5,000,000	원고들이 사해행위로 주장하지 않음
21	2017. 4. 20.	5,500,000	원고들이 사해행위로 주장하지 않음
22	2017. 5. 22.	19,000,000	
23	2017. 6. 20.	12,000,000	
24	2017. 7. 21.	20,000,000	
25	2017. 8. 16.	4,300,000	원고들이 사해행위로 주장하지 않음
26	2017. 8. 21.	4,500,000	원고들이 사해행위로 주장하지 않음
27	2017. 9. 20.	4,570,000	원고들이 사해행위로 주장하지 않음
28	2017. 9. 21.	1,800,000	원고들이 사해행위로 주장하지 않음
29	2017. 9. 27.	4,000,000	원고들이 사해행위로 주장하지 않음
30	2017. 10. 20.	4,800,000	원고들이 사해행위로 주장하지 않음

31	2017. 11. 10.	3,000,000	
32	2017. 12. 8.	3,100,000	
33	2017. 12. 15.	5,400,000	
34	2018. 1. 18.	2,600,000	원고들이 사해행위로 주장하지 않음
35	2018. 3. 23.	800,000	
36	2018. 4. 4.	2,840,000	
	합계	277,490,560	

(표를 위한 여백)

순번	송금일	송금액(원)	비고
1	2016. 2. 3.	14,000,000	
2	2016. 2. 15.	18,000,000	
3	2016. 11. 7.	20,000,000	
4	2016. 11. 7.	20,000,000	
5	2016. 11. 11.	12,000,000	
6	2017. 5. 12.	3,000,000	원고들이 사해행위로 주장하지 않음
7	2017. 5. 15.	2,400,000	원고들이 사해행위로 주장하지 않음
8	2017. 6. 12.	3,000,000	원고들이 사해행위로 주장하지 않음
9	2017. 6. 13.	1,600,000	원고들이 사해행위로 주장하지 않음
10	2017. 6. 15.	5,500,000	
11	2017. 6. 19.	6,500,000	
12	2017. 6. 26.	3,000,000	원고들이 사해행위로 주장하지 않음
13	2017. 7. 10.	1,000,000	
14	2017. 7. 24.	2,420,000	원고들이 사해행위로 주장하지 않음
15	2017. 11. 27.	2,000,000	
16	2017. 12. 5.	3,000,000	
17	2017. 12. 11.	5,000,000	
18	2017. 12. 22.	1,900,000	
	합계	124,320,000	

반면, 피고 D는 2016. 1. 8.부터 2018. 10. 11.까지 F의 계좌로 합계 297,486,202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E는 2016. 1. 28.부터 2018. 10. 8.까지 F의 계좌로 합계 333,705,184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들이 F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내역>

피고 D이 F에게 송금한 돈		피고 E가 F에게 송금한 돈	
거래일시	송금액(원)	거래일시	송금액(원)
2016. 1. 8.	500,000	2016. 1. 28.	1,000,000
2016. 1. 22.	40,000,000	2016. 2. 5.	2,000,000
2016. 1. 22.	9,000,000	2016. 2. 5.	100,000
2016. 1. 22.	1,900,000	2016. 2. 5.	582,000
2016. 1. 27.	4,200,000	2016. 2. 17.	4,480,000
2016. 1. 29.	1,000,000	2016. 2. 25.	5,000,000
2016. 2. 2.	1,000,000	2016. 3. 7.	100,000
2016. 2. 3.	500,000	2016. 3. 7.	581,600
2016. 2. 20.	1,600,000	2016. 3. 9.	1,000,000
2016. 2. 23.	1,410,000	2016. 3. 31.	2,400,000
2016. 2. 23.	3,010,000	2016. 4. 1.	50,000,000
2016. 3. 4.	3,800,000	2016. 4. 11.	4,200,000
2016. 3. 18.	5,000,000	2016. 5. 10.	3,300,000
2016. 4. 5.	300,000	2016. 6. 30.	10,000,000
2016. 4. 18.	2,500,000	2016. 9. 5.	3,000,000
2016. 5. 19.	970,000	2016. 11. 3.	65,000,000
2016. 5. 23.	1,364,000	2016. 11. 11.	2,000,000
2016. 5. 25.	500,000	2016. 12. 1.	300,700
2016. 5. 31.	2,400,000	2018. 9. 14.	1,330,000
2016. 6. 2.	3,500,000	2018. 10. 8.	91,760,431
2016. 6. 7.	20,000,000	2018. 10. 8.	85,570,453
2016. 6. 7.	581,600		
2016. 6. 9.	4,000,000		
2016. 6. 23.	18,000,000		
2016. 6. 28.	1,600,000		
2016. 6. 28.	3,350,000		
2016. 6. 28.	8,250,000		
2016. 6. 30.	5,000,000		
2016. 7. 5.	1,100,000		
2016. 7. 5.	440,000		
2016. 7. 29.	15,000,000		
2016. 8. 16.	1,450,000		
2016. 9. 19.	5,000,000		

2016. 9. 23.	3,000,000		
2016. 9. 28.	1,400,000		
2016. 10. 10.	1,700,000		
2016. 10. 17.	800,000		
2016. 10. 19.	200,000		
2016. 11. 17.	2,000,000		
2016. 11. 28.	5,400,000		
2016. 11. 29.	19,512,000		
2016. 12. 1.	700,350		
2016. 12. 28.	1,000,000		
2017. 1. 10.	1,670,000		
2017. 1. 25.	1,000,000		
2017. 2. 10.	2,000,000		
2017. 2. 23.	3,200,000		
2017. 2. 27.	3,000,000		
2017. 3. 24.	10,000,000		
2017. 3. 24.	10,000,000		
2017. 4. 17.	1,000,000		
2017. 5. 11.	4,000,000		
2017. 5. 23.	7,290,000		
2017. 6. 30.	4,000,000		
2017. 11. 29.	2,000,000		
2018. 1. 24.	500,000		
2018. 2. 21.	1,000,000		
2018. 4. 16.	12,200,000		
2018. 4. 25.	3,200,000		
2018. 5. 11.	3,000,000		
2018. 6. 15.	500,000		
2018. 7. 20.	3,898,252		
2018. 10. 1.	18,000,000		
2018. 10. 2.	1,790,000		
2018. 10. 11.	300,000		
계	297,486,202	계	333,705,184

위와 같이 비단 원고들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이외에도 피고들과 F 간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이루어진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반대로 피고들이 F의 계좌로 송금한 돈도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과 F 간의 수많은 금전거래 중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만을 따로

구별하여 사해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 D의 국민은행 예금거래내역(을 제7호증의 1)에 의하면, F로부터 피고 D의 국민은행 계좌로 별지1, 2, 3 목록에 기재된 돈이 송금된 후 같은 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카드결제대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F가 피고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후 카드대금 결제일에 맞추어 그 결제대금을 피고들의 계좌로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도 일부 부합된다.

③ F의 부산은행 예금거래내역(갑 제5호증)에 의하면, F가 원고 A에게는 2015. 2. 3.부터 2018. 6. 19.까지 60회에 걸쳐 합계 94,920,721원을, 원고 B에게는 2016. 8. 9.부터 2019. 2. 16.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30,550,715원을, 원고 C에게는 2015. 6. 9.부터 2018. 7. 30.까지 74회에 걸쳐 총 220,563,933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비단 이 사건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각 대여금 채권 이외에도 F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 일부 채권은 변제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석, 판사 한혜진, 판사 신승아

별지 1

연도	피고 		피고 	
	날짜	변제 금액(원)	날짜	변제 금액(원)
2016년	01월 13일	12,800,000	02월 03일	14,000,000
	04월 22일	16,500,000	02월 15일	18,000,000
	06월 23일	16,000,000	11월 07일	20,000,000
	09월 19일	16,000,000	11월 07일	20,000,000
	12월 27일	16,650,560	11월 11일	12,000,000
	합계	77,950,560	합계	84,000,000

끝.

별지 2

연도	피고		피고	
	날짜	변제 금액(원)	날짜	변제 금액(원)
2017년	05월 22일	19,000,000	06월 15일	5,500,000
	06월 20일	12,000,000	06월 19일	6,500,000
	07월 21일	20,000,000	07월 10일	1,000,000
	합계	51,000,000	합계	13,000,000

끝.

별지 3

연도	피고		피고	
	날짜	변제 금액(원)	날짜	변제금액(원)
2017년	11월 10일	3,000,000	11월 27일	2,000,000
	12월 08일	3,100,000	12월 05일	3,000,000
	12월 15일	5,400,000	12월 11일	5,000,000
	-	-	12월 22일	1,900,000 중 309,320만 취소
2018년	03월 23일	800,000	-	-
	04월 04일	2,840,000	-	-
	합계	15,140,000원	합계	10,309,320원

끝.

1) = 2017. 5. 12.부터 2018. 8. 1.까지의 대여금 합계 8,600만 원 - 변제된 2,200만 원

2) = 2017. 7. 14.부터 2017. 9. 7.까지의 대여금 20,449,320원 + 2017. 11. 8.자 대여금
1,000만 원 - 변제된 500만 원

3) = 별지1 목록 기재 금원 합계 161,950,560원 + 별지2 목록 기재 금원 합계 6,400만 원 + 별지3
목록 기재 금원 합계 25,449,320원